

18 (第128回-第4次)

<p>정수하며, 구세에 부과 또는 병기하여 고지된 시세와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회사 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기존방식대로 구청장이 정수코자 함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p>가. 시세체납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1년 6월말 시세체납액은 1조 2,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, 그중 주민세 체납액이 48.2%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으며,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전체의 6%이고, 체납 규모는 '95년 기준으로 2배 증가하였음. ○ 주요증가 사유는 가산금 부과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으로 해서 체납액의 24%가 가산금으로 부과된 것임. <p>나. 체납발생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선자치제 이후 자치구청장의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정수의지 부족과 체권확보를 위한 전문적 지식부족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정수활동 부진과 정수불능 체납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 회피가 주요원인임. <p>다. 대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세체납 규모가 1조 2,000억 원을 넘어설 때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,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"고액체납시세 특별징수반"을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92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투자를 촉진시키고 주택수요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. 나. 주요골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전용면적 60㎡ 이하인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60㎡ 초과 85㎡ 	의안 번호	923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	<p>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5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함. 나. 주요골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시행령이 현행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제20조의2제2항제1호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리하고, ○ 기금의 용도 중 현행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서 인명구조, 부상자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로 변경하고자 함.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제점 없음.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92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투자를 촉진시키고 주택수요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. 나. 주요골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전용면적 60㎡ 이하인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60㎡ 초과 85㎡ 	의안 번호	923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
의안 번호	923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					
의안 번호	923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					

<p>이하인 공동주택(단, 2001.5.23~2002.12.31 까지 최초분양계약을 하고 2004.12.31까지 취득할 경우)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%를 경감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.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p>가. 공동주택분양 입주자에 대한 감면화대조치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, 주택수요촉진을 위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에 따른 세수감소도 2004년까지 803억 원 정도 예상됨.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하여 해야 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나 복지정책도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, 현재 서울시의 부채가 6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빈번한 세수감면정책은 재정건전화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.</p> <p>나.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한 의사가 없었고, 원청업체의 부도로 부득이 대물변제로 받은 만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수정안의 요지</p> <p>가. 수정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을 시 하도급업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, 부정하게 취득세,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는 업자들의 의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. <p>나. 수정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안 제12조의2(하도급업체에 대한 감면)중 “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체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”를 “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체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”로 수정함. 	<p>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924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</td>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사회복지사업법”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“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”에 적용되는 법인에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%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케 함. ○ 최소분할면적이 90㎡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%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케 함. ○ 공유토지로서 서울시의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함. ○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함. ○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함.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	의안 번호	924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
의안 번호	924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		